

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3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충북체육고등학교가 충청북도수영장과 동일부지안에 건축이 되었고, 특히
충북수영장 2층에 충북체육고등학교 식당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동일구역
동일건축물내에 2개 기관이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
청북도수영장의 장장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충청북도수영장의 장장을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던 것을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
겸임토록 변경함 (안 제4조제1항).

□ 개정근거 : 해당없음

□ 조 례 안 : 별첨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장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”를 “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검임토록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